

무용진흥법안

(유정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299
----------	-------

발의연월일 : 2024. 1. 17.

발 의 자 : 유정주 · 이상현 · 임종성
문정복 · 박 정 · 민병덕
윤재갑 · 이용빈 · 김의겸
최혜영 의원 (10인)

제안이유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을 포함하는 무용은 대중화·세계화가 가능한 예술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따라 무용과 무용문화산업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예산지원 등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무용 창작, 교육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진흥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용예술위원회를 둠(안
제6조).

마. 무용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용진흥기금
을 설치하도록 하고 무용의 창작과 보급 및 발전과 계승 등에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7조 ~ 제19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하에 무용 진흥 등에 관한 사무를 관
장하는 기관으로서 국립무용원을 두도록 하고, 국립무용원은 무용
창작과 공연개발·보급, 국내외 무용단체 간 교류 등의 업무를 수
행하도록 하며, 문체부장관은 무용의 보급·발전 및 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무용원의 지방무용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0
호).

참고사항

이 법안은 유정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263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임.

무용진흥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무용 창작, 교육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용”이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신체로 표현한 예술로서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실용무용, 생활무용 등을 말한다.
2. “무용인”이란 무용 창작, 공연, 교육, 비평, 학술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무용문화산업”이란 무용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무용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무용예술위원회

제6조(무용예술위원회) ①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용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설립등기 등) ① 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위원회의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정관)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위원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는 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추천위원회는 무용 내 각 분야 및 지역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이사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 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결원되면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④ 위원의 자격, 대우, 직무는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

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 제17조에 따른 무용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가 제17조에 따른 무용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
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
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제13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
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
아 위원장이 임명과 해임을 한다.

③ 사무처장은 상근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4조(감사) ① 위원회의 직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
여 위원회에 감사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감사는 상임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
될 수 있다.

제15조(성과의 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무용진흥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협의체의 구성) 위원회는 무용을 진흥하기 위하여 분야, 지역 간 협의 및 조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무용진흥기금

제17조(기금의 설치 등) ① 무용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용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무용진흥기금은 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무용진흥기금은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8조(무용진흥기금의 조성) ① 무용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무용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② 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그 가액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무용진흥기금의 용도) 무용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무용의 창작과 보급
2. 무용의 발전과 계승
3. 무용문화산업 발전
4. 국내외 무용교류
5. 무용인의 양성 및 직업 교육
6. 무용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7. 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 장애인 등 소외계층 관련 무용 창작과 보급
9. 무용 관련 학술 및 연구를 위한 사업
10. 무용 관련 도서관 및 박물관 등 시설 건립·지원을 위한 사업
11. 그 밖에 무용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20조(국립무용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무용 진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국립무용원을 둔다.

② 국립무용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무용 창작과 공연개발·보급
2. 국내외 무용단체 간 교류
3. 무용자료의 수집·제공·전시 및 관리
4. 무용인의 복지 향상 정책 및 인권 보호
5. 무용 관련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산 정보체계를 통한 정보와 자료의 유통
6. 기타 무용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의 보급·발전 및 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무용원 소속에 지방무용원을 둘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무용 교육과 무용인 양성 등

제21조(학교 등의 무용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등 교육 기관에 무용과 관련된 교과를 하나 이상 두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직장에 구성원의 정서와 교양을 위하여 무용과 관련된 활동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소외계층 관련 무용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의 무용 창작 및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소외계층의 무용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외계층의 무용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소외계층 대상 무용 창작 및 교육 사업과 무용 관련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무용인 직업 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용과 관련된 직업 창출, 진로 탐색 기회 확대, 직업분류 개발 등 무용인의 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용인의 직업 훈련 등을 위한 사업 및 무용 관련 단체에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에 따른 준비행위) 이 법에 따라 무용예술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